

심의결과 통지서

연구 과제명 : 클리펠-트레노네이 증후군 환자에서의 근력운동 가치

연구 책임자(소속/직명/성명)

귀하

연구 의뢰자(소속/직명/성명)

귀하

귀하가 신청하신 위의 신규심의 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.

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일시 : 2020 년 05 월 27 일

심 사 결 과

☐ 조건부승인

☐ 시정승인

☐ 보완

☐ 승인된 임상시험의 중지 또는 보류



임상시험 심사결과 통지서

(임상시험 책임자용)

연구 책임자



귀하

광주기독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



귀하가 신청한 신규심의 신청서 건에 대하여 본원 기관생명윤리심의 위원회에서 심의·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- 다 음 -

과 제 번 호	KCH-RE-2020-002		심 의 번 호		KCHIRB-RE-2020-002	
연 구 과 제 명	클리펠-트레노네이 증후군 환자에서의 근력운동 가치					
연 구 기 간	IRB 승인일로부터 -					
연 구 책 임 자	소 속	재활의학과	직 명	진료과장	성 명	조 윤 경
연 구 의 회 자	연구자주도					
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일시	2020. 11. 25					
심 사 위 원 장	소 속	비뇨의학과	직 명	진료과장	성 명	박 성 운
심 사 결 과	심사결과: 연구가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					완
심 의 안 건 및 사 유 (필 요 시)						
지 속 심 의 주 기	※ 2021년 11월 25일 정기회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
※ 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KGCP 및 ICH를 준수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, 의약품 임상시험,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 관련법규를 준수합니다.

주) 임상시험 계획서의 주요변경 또는 자료 보완 등이 요구되거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의 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임상시험 심사결과 통지서

(임상시험 의뢰자용)

연구 의뢰자

2020 년 05 월 27 일

귀하

광주기독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

귀하가 신청한 신규심의 신청서 건에 대하여 본원 기관생명윤리심의 위원회에서 심의·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- 다 음 -

과 제 번 호	KCH-RE-2020-002		심 의 번 호		KCHIRB-RE-2020-002	
연 구 과 제 명	클리펠-트레노네이 증후군 환자에서의 근력운동 가치					
연 구 기 간	IRB 승인일로부터 -					
연 구 책 임 자	소 속	재활의학과	직 명	진료과장	성 명	조 윤 경
연 구 의뢰자	연구자주도					
기관생명윤리 심의 위원회 개 최 일 시	2020년 05 월 27 일					
심 사 위 원 장	소 속	비뇨의학과	직 명	진료과장	성 명	박 성 운
심 사 결 과	완료					
심의안건 및 사 유 (필 요 시)						
지속심의 주기	※ 지속심의 주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지속심의 신청시 중간보고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
※ 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KGCP 및 ICH를 준수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, 의약품 임상시험,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 관련법규를 준수합니다.

주) 임상시험 계획서의 주요변경 또는 자료 보완 등이 요구되거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의 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